파주시 공고 제2026-3010호

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

2. 개정이유

○ 읍·면·동 위임 사무의 본청 환원 및 소관부서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현행 규정명 반영(안 제4조)

나.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(안 별표)

1) 위임사항 조정 내역

가) 소관부서 변경 : 1건

나) 위임사무 삭제 : 7건

4. 개정규칙안 : 별 첨

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2월 20일 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・우편・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・성명・생년월일・연락전화번호・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조직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8606 / Fax 031)940-4109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